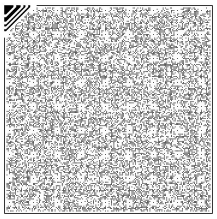
환경부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병 · 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

1. 관련 문서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및 514(2022.2.9.)

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2.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호흡기진단클리닉 등)가 도입되면서 우리부는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 진단·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자가진단키트(RAT포함), PCR, 보호장비

3.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추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신속·안전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자체 및 협회에서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배출자에 동 내용을 안내 및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주무관	권예진	환경사무관	김민석	과장	전결 2022.9.1. 이정미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2859 (2022. 9. 2.) 접수

우 30103 세종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1 팩스번호 044-201-7235 / noelyejin@me.go.kr / 비공개(5)